

폐기물처리업  
 폐기물처리시설  
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 
 전용용기 제조업

양수·인수 허가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
	30일		
양도인	① 상호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성명(대표자)	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	
	⑤ 주소(사무실)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전화번호: _____ )</span>		
양수인 또는 인수인	⑥ 상호(명 칭)	⑦ 사업자등록번호	
	⑧ 성명(대표자)	⑨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	
	⑩ 주소(사무실)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전화번호: _____ )</span>		
신청 내용	⑪ 양수·인수 업종	⑫ 허가·신고·승인·등록 연월 일	⑬ 허가·신고·승인·등록번호
	⑭ 양수·인수 가격	⑮ 양수·인수 일자	⑯ 인수 방법
	⑰ 양수·인수 사유		
	⑱ 미이행된 법적 책임		
	⑲ 보관·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현황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

- 폐기물처리업  
 폐기물처리시설  
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 
 전용용기 제조업

의 양수·인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양수인 또는 인수인

(서명 또는 인)

**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** 귀하

<p>신청인 첨부서류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(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·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(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.)</li> <li>3. 허가신청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4.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</li> <li>5. 권리·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/ol>	<p>수수료 없음</p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</li> <li>2. 폐기물 처분시설·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·신고증명서</li> <li>3.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</li> </ol>	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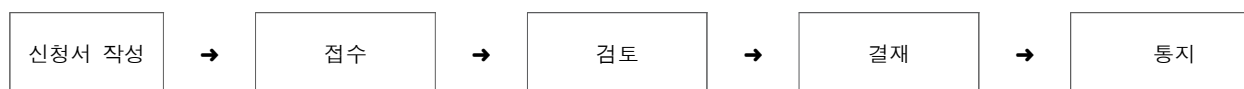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작성방법**

1.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, 폐기물처리 신고,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·신고,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의 양도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 (경매 등을 통한 인수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)
2. ⑥란부터 ⑩란까지는 양수인 또는 인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3. ⑪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, 폐기물처리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,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경우에는 생산 전용용기를, 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.
4. ⑫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일, 폐기물처리 신고수리일,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일·신고수리일,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일을 적습니다.
5. ⑬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번호, 폐기물처리 신고번호,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·신고번호,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6. ⑭란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,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받고 미이행한 사항을 적습니다.
7. ⑮란에는 양수·인수 허가신청 현재 사업장에 보관·방치(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합니다) 중인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적습니다.

**처리절차**



신청인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